의 안 번 호	제133호
의결 연월일	2018. 12. 20.

## 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임시특별회계 -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11월 19일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: 2018년 11월 19일

다. 상 정 일 자: 2018년 12월 20일,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도시재생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재정법」제9조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설정 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설정 (안 제2조의2)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5. 토론요지 : 생 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